성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 ○ 상위법인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 ○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방법 신설(안 제2조)
 ○ 성별분석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 구체적 명시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 가. 관계법령 :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10조의2
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 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8272('17. 9.11.)]
 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 [주민복지과-53800('17. 9.29.)]
 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 (예고기간 : '17. 9.21. ~ '17.10.11.)

5. 검토의견
 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『성별영향분석평가법』과 내용이 상이한 사항인 "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방법"과 평가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
 ○ 주요 개정 내용은 "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"를 할 경우에는 "성별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"의 심의·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토록 "안 제2조"를 신설하고, 위원의 임기를 위촉직과 전임위원으로 세분화하였으며, "안 제7조"에서 규정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항목은 『성주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』에 따라 지급함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 ○ 검토결과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일부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